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8-758 제안연월일: 2021. 12. 1. 제 안 자:의회운영위원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에 따라 지방의회의 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인용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(안 제1조, 안 제4조)

3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1

4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. 현행조례 : 붙임 3

6. 관계법령 : 붙임 4 (발췌문)

[붙임 1]

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·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법 "제33조" 를 "제40조" 로 하고, 영 "제33조" 를 "제36조" 로 한다. 제4조 본문 중 "별표 5" 를 "별표6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혀 했 개 정 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 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·의정활동 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하는 때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5의 여비지급범위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 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 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|**제4조(여비지급)**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|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·외 여행하는 때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6의 여비지급범위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